

	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	제정일	2019. 4. 1
		개정일	
		개정차수	차
		담당부서	혁신지원단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혁신지원단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속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‘평가위원회’라 한다)의 운영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구성)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혁신지원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 3조 (기능)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
2.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평가 및 심의
3. 기타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

제 4조 (회의) ① 평가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5조 (회의록) 평가위원회의에서 자문 및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며,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